

[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1-8호]

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(의료기관) 평가 지원 사업 모집 공고

2021년도 『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(의료기관) 평가 지원 사업』을 수행할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 및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2021년 1월

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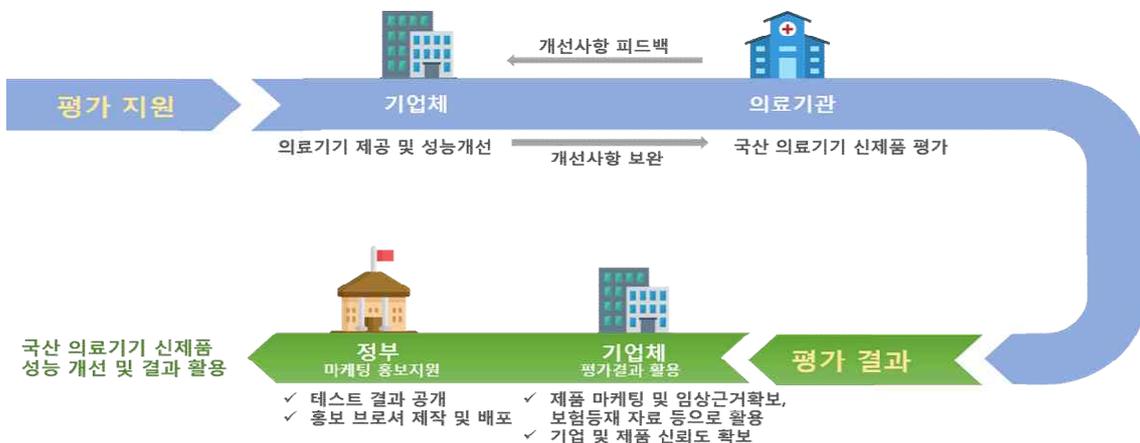
사업 개요

- 국산 신제품의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 확보를 위해 혁신기술 등이 적용된 신제품 사용자(의료기관) 평가 지원
- 수입 제품 사용 비중이 높은 국내 주요 의료기관을 통해 국산 유망 신제품의 평가 및 시장진입을 지원
 - 의료기관 사용자(의료진)의 평가를 통한 국산 신제품의 우수성 검증 및 성능 개선
- 브랜드 파워가 있는 의료기관의 신제품 평가 결과를 적극 홍보하여, 중소 의료기기기업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, 대학병원 진출, 수출 확대를 통한 시장진출 지원

<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(의료기관) 평가 예시 >

- 의료기관의 기존 사용제품과 신제품 간의 비교평가 (결과는 국산 제품의 마케팅·홍보 등에 활용)
- 보험등재, 해외 인허가(CE-MDR) 등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신제품의 치료효과 등의 검증평가 (기존제품 대비 임상적 유용성, 비용효과성, 기술혁신 개선)
- 신제품 성능을 검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 (사용적합성평가, 비임상평가 등)

<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(의료기관) 평가 지원체계 >



□ 지원기간 및 비용

○ 사업 기간 : 2021년 3월~11월(9개월)

- * 제품의 특성 및 제품 평가 방법에 따라 **사업기간은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하며, 2년 과제는 총 지원 과제의 50% 이내로 선정**, 사업 신청 시 **단년/다년으로 구분하여 지원**
- * 2차년도 계속 지원은 선정된 해당년도를 포함하여 최대 2년 지원하며, 1년 단위로 계속 지원 여부 평가(협약체결, 예산 지급 및 집행 등 연 단위로 사업 수행)

○ 지원 금액

- (단년도) 최대 7,500만원/1년 이내
- (다년도) 최대 20,000만원/2년 이내

* 다년도 사업의 경우, 1·2차년도 각각 10,000만원 이내 지원

* 단, 사용적합성평가 또는 비임상평가 단독수행시 최대 2,000만원 이내(단년도)

2 사업 내용

□ 지원 대상

- (지원기관) 주관기관(의료기관)과 참여기업(제조기업)으로 구성된 컨소시엄
 - 주관기관 : 상급종합병원(의료법 제3조의4), 종합병원(의료법 제3조의3), 전문병원(의료법 제3조의5)
 - * 대학병원, 치과대학병원, 한의과대학병원 등 포함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임상시험실시기관
 - * 단일 기관만 지원 가능하며, 다기관 지원을 원하는 컨소시엄은 향후 '의학회 연계 사용자 평가 지원사업' 참고(2월 공고 예정)
 - 참여기업 : 평가 대상 제품을 제조한 국내 제조기업(중소기업 등)
- (지원 제품)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 허가·인증 및 신고 후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거나 판매 초기인 국산 신제품*
 - *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(정의)에 해당되는 제품으로,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급 시장에 진입하여 국산 점유율 상승이 가능하며 식약처 신고·인증허가 완료된 제품

- 국내 종합병원 이상(치과병원·한방병원 포함)에서 교체·구매 가능한 품목 또는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대상제품 우대
- 주관기관은 다수의 제품을 평가할 경우, 과제별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(단, 연구책임자 1인당 1과제 신청 가능)

□ 지원 내용

- 정부는 주관기관이 국산 신제품 평가에 필요한 소요비용(과제당 최대 7,500만원/년 이내, 최대 20,000만원/2년 이내) 지원
 - 신제품 평가 인력 인건비, 재료비, 시험비, 의학회 학술발표비 등
 - * 정부 지원금은 최종 선정된 과제 수, 과제 규모 등을 검토하여 조정될 수 있음

<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(의료기관) 평가 예산 지원 안내 >

- 사업기간을 2년으로('21~22년)으로 신청한 경우, 정부지원 금액은 최대 2억원 (1차년도 10,000만원, 2차년도 10,000만원)을 지원
- * '21년 말 1차년도 사업추진 결과를 평가(연차평가)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
- 사업비 예산 편성 비중(국고보조금 보조 비목 및 세목 산정기준 참조)

| 예산 구분 | 세부 설명 | 예산 비중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
| 인건비 |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및 평가를 수행하는 담당자에게 지급하는 급료 | 총 예산의 50% 이내 |
| 평가비 (재료비 및 시험비 등) | 해당 제품의 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운영비용 | 총 예산의 40% 이상 |
| 일반관리비 (공공요금 및 제세) | 해당사업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운영 관리비 등 (비목 산정기준 참조) | 총 예산의 5% 미만 |

- * 비목의 정의 및 사용 범위는 기획재정부의 「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」을 준용하며, 보조금 사업의 특성상 간접비는 사업비에 편성·계상할 수 없다.
- 사업예산은 선정통보일로부터 집행가능(협약완료 이전 사용 금액 소급적용 가능)

□ 지원 조건

- (주관기관)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평가에 필요한 인력 및 공간, 시설 등을 제공
 - * 선정된 컨소시엄은 사업 기간 내 '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'를 통해 신제품 평가 및 시장진입 등에 관련한 회의 및 상담 진행
- (참여기업) 신제품 평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기업부담금으로 부담
 - * 신제품 평가에 필요한 참여기업 제품은 주관기관에 **현물로 제공**하고, **기업부담금(현금)으로 정부지원금의 30%를 부담**(다년도 지원의 경우, 1차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부담)
- (사업비 집행) 정부지원금은 2회 분할(7:3) 지급하며, 1차분은 사업 시작 시(3월), 2차분은 하반기 시작 시(9월, 예정) 사업비 교부
 - * 총 사업비는 [붙임] "사업 보조비목·세목별 산정기준" 에 따라 편성·집행
 - * 본 사업은 **민간경상보조사업**으로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**"e나라도움 시스템" 관리를 통하여 집행**

<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(의료기관) 평가 추진 시 유의사항(주관기관) >

- 사업계획서 상의 **평가 내용 및 성과목표는 협약 후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**하므로 수행 가능한 성과목표를 설정(추후 사업 지원 시 감점)
- IRB 승인 등 제품 평가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사업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
 - ※ 「임상연구 영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」에 따른 임상연구 영양 급여 결정 승인 포함
- **기업부담금은 협약일로부터 1주 이내 주관기관으로 입금**하고 주관기관에서는 기업 부담금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에 총사업비를 생성
- 주관기관은 **사업비(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)를 별도의 계정으로 집행·관리**하여야 하며, 사업비 집행 및 예산 관리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을 사용(예치형 과제)하여야 함.
- 본 과제는 정산과제로, 사업종료 즉시 회계감사를 통해 사업비(정부지원금+ 민간부담금) 집행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
- 관리기관은 사업추진 현황 및 결과보고 등의 사업 점검을 통해 사업수행이 미흡하다 판단되면 **사업 중단 또는 지원금 삭감 및 환수 조치가 가능함**

□ 주요 사업내용

○ 국산 신제품 평가(주관기관)

- 주관기관은 사업기간동안 국산 신제품을 사용하고, 제품의 성능을 평가
- * 제품 우수성 입증, 성능 개선 등 명확한 목적을 설정하여 사업종료 후 마케팅, 성능 개선, 건강보험 가치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에 앞서 신제품 임상 프로토콜 수립

○ 국산 신제품 개선(참여기업)

- 주관기관은 평가 제품을 사용한 의견을 참여기업에 피드백
-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의 제품 사용 의견을 토대로 평가 제품 개선 사항을 받아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
- 참여기업은 평가 제품의 전년, 금년, 차년도 매출액을 매년 11월 말까지 보고

○ 평가 완료 제품의 결과 활용(주관기관-참여기업, 정부)

- 주관기관은 제품 평가를 통해 입증된 제품 우수성을 논문 게재, 의학회 발표, 성과교류회(11월 예정) 발표 등 성과물 창출
- 참여기업은 신제품 평가 결과를 활용한 의료기관 판매, 건강보험 치료재료 가치평가 수행, CE-MDR 인증 등 성과물 창출

< 참고 : 치료재료 가치평가 제도 >

- ① **획기성·기술개량 가치평가** : 기존제품에 비해 임상적 유용성, 비용효과성, 기술혁신성 입증시 최대 2배(10~100%) 가산
- ② **기술개발 노력 가산** : 복지부 지정 연구중심병원, 지정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임상시험기관 등에서 임상시험을 하고 임상자료 제출시 3년간 5% 가산

※ 보건복지부 고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[별표1] 1호 나목 및 파목

- 정부는 신제품 평가 결과를 공개, 참여기업은 신제품 평가 결과를 마케팅 등에 활용

| 구분 | 사업내용 | 사업목표 |
|----|------------------|--|
| 1 | 국산 신제품 평가 | 평가 보고서(임상적 성능 자료, 사용적합성 평가 등) 제출 |
| 2 | 국산 신제품 개선 | 제품 평가 후 개선의견 제출 * 변경된 기술문서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변경허가서 추후 제출 |
| 3 | 평가 완료제품 결과 활용 | 평가 결과에 대한 논문 등 학술대회 발표, 매출액 추이 등 제출 * 논문의 경우 게재예정증명서 인정 * 사업 종료 후, 3년 이내까지 해당 제품 논문 및 매출 실적 조사(의료기관 진입 여부 포함) 예정 |

- 전년도 사업수행 최종평가 결과(매년 12월), 평가기관 구매연계, 학술대회 발표, 치료재료 가치평가 등 성과가 우수한 과제는 본 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

4

사업추진 절차

□ 추진절차

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공고 및 신청 접수 | 한국보건산업진흥원 | 1월 ~ 2월 중 |
| ↓ | | |
| 컨소시엄 평가 및 선정 | 한국보건산업진흥원 (평가위원회) | 2월 ~ 3월 |
| ↓ | | |
| 협약체결 | 한국보건산업진흥원-주관기관 | 3월 중 |
| ↓ | | |
| 착수보고 및 신제품 평가 추진 | 주관기관 | 4월~ |
| ↓ | | |
| 중간점검(서류) | 한국보건산업진흥원 | 7월 ~ 8월 중 |
| ↓ | | |
| 사업종료(결과보고서 제출) * 지정된 회계 법인을 통한 정산보고서 포함 | 주관기관 | 11월 30일 |
| ↓ | | |
| 결과보고 | 주관기관 | 12월 초 |
| ↓ | | |
| 평가 결과 활용 (평가 결과 공개 및 홍보지원) | 보건복지부, 보건산업진흥원 | 12월~ |

- * 선정평가 및 결과보고 시 **주관기관 연구책임자가 발표**(대리발표 시 발표일 이전 사전 승인)
- * 중간점검(서면보고) 검토 후 필요 시 현장점검이 가능하며, 중간점검 결과 사업 수행이 현저히 미비하여 사업기간 내 완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협약 해지 및 지원금의 환수 가능
- * 제품의 특성 및 평가 성격에 따라 사업기간을 '22년까지 신청한 경우, 1차년도 사업은 11월 30일 종료하고, **12월 결과보고 시 평가를 통해 2차년도 지원여부를 결정**
- *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을 포함한 **총 사업비를 대상으로 회계정산보고서 제출 요함**
- * 선정평가는 모집기관의 **3배수 이상 신청의 경우 1차 서면평가로 1.5배수 선발 후 2차 구두평가로 최종선정** 예정
- * 최종 평가결과 '우수과제 책임자'는 향후 3년간 가점(3) 부여 '저조'의 경우 향후 3년간 감점(3) 부여
- * 사업점검 시 불성실 과제(사업수행 및 예산 사용 등)는 향후 3년간 사업 참여 제재조치

□ 협약 체결 및 지원금 지급 절차

| | | |
|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선정 통보 및 협약 서류 안내 | 한국보건산업진흥원 | 3월 중 |
| ↓ | | |
| 필요 서류 제출 | 주관기관 | 통보 후 15일 이내 |
| ↓ | | |
| 협약체결 (선정 통보일로부터 11월30일까지) | 한국보건산업진흥원-주관기관 | 3월 중 |
| ↓ | | |
| 선금 지급 | 한국보건산업진흥원-주관기관 | 3월 중 |
| ↓ | | |
| 사업종료(결과보고서 제출) * 지정된 회계 법인을 통한 정산보고서 포함 | 주관기관 | 11월 30일 |
| ↓ | | |
| 잔금 지급 | 한국보건산업진흥원-주관기관 | 12월 중 |

- * 협약 체결 및 선금 지급 필요 서류 : 협약서,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, 인감증명서, 법인등기부등본,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, 수입인지, 선금청구 공문, 선금 교부신청서, 이행(계약)보증보험증권,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등(선정 후 별도 안내)
- * 잔금 지급 필요 서류 : 잔금청구 공문, 잔금 교부신청서, 완료계, 회계정산보고서, 결과보고서 등(선정 후 별도 안내)
- *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은 기업부담금 우선집행(최소 동일비율)을 원칙으로 함

□ 평가 및 선정 방법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서류검토 (한국보건산업진흥원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주관기관, 주관책임자의 자격, 참여 제한, 과제 첨부서류, 기업부담금 등의 검토 · 서류검토 후 평가대상 과제 선정 (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보완기회 부여, 자료요구 마감 이후 제출되는 서류는 탈락처리) |
| ↓ | |
| 서면평가 및 구두평가 (전문가 평가위원회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청제품의 시장 유망성, 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, 주관기관의 전문성, 향후 기대효과 등을 평가 |
| ↓ | |
| 종합평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과제별 최종점수에 따라 지원과제 선정 |

- * 구두 평가 시 일시·장소 별도 통지

□ 평가항목 (평가 시 항목 변동 가능)
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<p>신청제품의 시장 유망성 (40)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제품 시장성(대학병원 확산 가능성, 수입대체 가능성) - 신청제품의 기술 혁신성, 수출 가능성 - 신청제품의 지속 사용 가능성 - 신청기업의 경쟁력(연구개발 투자 비중 및 매출 등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p>추진계획의 타당성 (35)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평가 지표설정의 타당성 - 사업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 - 사업기간 내 평가 관련 발표 계획의 적절성 - 평가 금액 및 지출계획의 타당성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p>주관기관의 전문성 및 국산 의료기기 사용 노력도 (15)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료기관의 브랜드 인지도 - 의료기관의 제품 평가 인프라 현황(참여 인력, 시설 등) - 의료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의 제품개발 및 임상시험 등 수행 실적 - 의료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의 국산 의료기기 구매 실적 - 기타 연구수행 실적 등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p>기대효과 (10)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수행 결과의 파급효과 - 향후 결과 활용의 적극성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p>가.감점* (10)</p> | 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: none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 border: none;">1.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(3점)</td> <td style="width: 50%; border: none;">7. 여성기업(1점)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: none;">2. 혁신의료기기 지정제품(3점)</td> <td style="border: none;">8. 장애인기업(1점)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: none;">3. 보건신기술(NET) 인증기업(3점)</td> <td style="border: none;">9. 벤처 인증기업(1점)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: none;">4.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제품(3점)</td> <td style="border: none;">10. 사회적 기업(1점)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: none;">5. 우수과제 책임자(3점)</td> <td style="border: none;">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: none;">6. 불성실과제(저조과제) 책임자(-3점)</td> <td style="border: none;"></td> 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top: 5px;">* 가점은 최대 10점까지 반영</p> | 1.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(3점) | 7. 여성기업(1점) | 2. 혁신의료기기 지정제품(3점) | 8. 장애인기업(1점) | 3. 보건신기술(NET) 인증기업(3점) | 9. 벤처 인증기업(1점) | 4.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제품(3점) | 10. 사회적 기업(1점) | 5. 우수과제 책임자(3점) | | 6. 불성실과제(저조과제) 책임자(-3점) | |
| 1.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(3점) | 7. 여성기업(1점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2. 혁신의료기기 지정제품(3점) | 8. 장애인기업(1점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3. 보건신기술(NET) 인증기업(3점) | 9. 벤처 인증기업(1점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4.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제품(3점) | 10. 사회적 기업(1점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5. 우수과제 책임자(3점)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6. 불성실과제(저조과제) 책임자(-3점)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*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기업 : 참여기업이 의료기기산업법 제2조제3호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

*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품 : 참여기업의 제품이 의료기기산업법 제2조제4호 및 제2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서를 발급받은 제품

* 사업기간 내 평가 완료 가능한 품목선정 및 평가 방법의 설계, 평가 제품이 대학병원에서 수입 대체 등 확산 가능한 품목을 중심으로 중점 평가

□ 공고 및 신청기간

- 2021.1.29 ~ 2021.3.4(5주간)

□ 신청방법

- 우편 및 방문접수
 - (28159)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 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층 의료기기산업지원팀

□ 신청서류

- 사업계획서 1부(전자문서는 e-mail로 한글파일 별도 제출(1개 파일로 묶어서))
 - * 스프링 및 여타의 제본 금지, 반드시 사업신청서 좌측상단 집게 고정
 - * 원본 전자 파일은 이메일 제출하며 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, 사업신청서 내용 및 아래 부록을 포함한 전문 수록(1개의 파일로)
 - *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(<http://www.khidi.or.kr/device>)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
- 공통 구비서류 :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(또는 법인 등기부등본) 각 1부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별지 서식) 1부
- 부록서류는 반드시 사업신청서 내부 “V 첨부 서류 “에 첨부
 - ①가산점 부여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, ②사업자 등록증, ③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사업 참여인력 전원), ④기타 신청 기업의 기술력 또는 제품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

□ 접수처

-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지원팀
 - 김완섭 연구원(043-713-8273, wskim@khidi.or.kr)

□ 문의처

○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지원팀

- 김완섭 연구원(043-713-8273, wskim@khidi.or.kr)

- 김서윤 연구원(043-713-8707, sykim04@khidi.or.kr)

※ 별지 붙임 : [1]사업계획서(양식), [2]운영지침, [3]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□ 최종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

- (최종사업계획서) 최종사업계획서[붙임1]에 따라 작성하여 선정 결과 통보 후 7일 이내에 기타 협약서류와 함께 전담기관(진흥원)으로 제출
- (사업계획 변경)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사전 승인 및 보고를 통하여 변경 사용
- (사업결과보고서) 사업수행기관은 사업결과보고서 및 관련 성과물을 사업 종료일(11월 30일) 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제출
 - ※ 본 사업은 “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(의료기관) 평가지원“ 운영 지침 및 협약서에 근거하여 수행하며, 기타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,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함.

□ 예산편성 및 집행

- (사업비 교부)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에 따라, 분할교부 방식으로 교부(상반기, 하반기)
- (사업비 정산)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에 따라,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(국비+기업 부담금)에 대한 정산을 위탁정산기관에 의뢰하여 집행예산 정산을 받아야 하며, 결과물과 함께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고 및 반납
- (사업비 변경) 사업비는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,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 후 공문 및 양식[참고2]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전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사용
 - ※ 모든 예산 집행은 “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”을 사용해야하며, 예산편성, 집행, 증빙, 변경, 회계감사 등 시스템을 사용하여 진행 함.
 - ※ 변경내역과 사유를 기재하여 관리기관에 승인받고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시 사업변경 내용을 기록함

【참고 1】 2021년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(의료기관) 평가지원 사업 보조비목 세목별 산정 기준

| 보조비목 | 보조세목 | 내역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|
| 인건비 (110) | 상용임금 (03) | 1. 무기계약직 |
| | 일용임금 (04) | 1.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- 일용직보수,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|
| 운영비 (210) | 일반수용비 (01) | 1. 사무용품 구입비 - 필기용구,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|
| | | 2. 인쇄비 및 유인비 - 자료 및 보고서, 책자, 각종 양식,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|
| | | 3. 안내·홍보물 등 제작비 - 현수막,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|
| | | 4. 소모성 물품 구입비 |
| | | 5. 간행물 등 구입비 |
| | | 6. 비품 수선비 - 책상, 의자, 캐비닛, 파일박스, 집기, 전산기기,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*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|
| | | 7.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- 물품관리위탁수수료, 업무대행수수료,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, 전송금, 우편송금수수료 - 등기 및 소송료(인지대 및 법정수수료) 등 - 감정료, 감정료, 시험료, 회계검사수수료 - 물품의 보관운송료, 고속도로통행료, 주차 및 차고료,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, 상하차비, 선적·하역비 |
| | | 8.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- 변호료·수임료 및 보수 - 속가·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- 현상 모집의 상금,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|

| 보조비목 | 보조세목 | 내역 |
|------|---------------|--|
| | | -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전검토비 |
| | | 9. 공고료 및 광고료 - TV·신문·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|
| | | 10. 각종 회의비, 전문가 활용비 |
| | | 11.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|
| | | 12.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|
| | 공공요금 및 제세(02) | 1. 공공요금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·가스료, 상·하수도료, 우물 수거료 2. 제세 - 법령에 의하여 지불·부담하는 제세(자동차세 포함) 및 국내부담금,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-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채당금 -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-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-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|
| | 임차료 (07) | 1. 장소,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2.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3.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|
| | 시설장비 유지비 (09) | 1. 건물 및 건축설비(구축물, 기계장치), 공구, 기구, 비품, 기타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.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(다만, 대체비는 노임, 제비용 포함) 유지비 3. 원동기 등 동력장치,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, 기타 육상 운반구(차량제외) 유지비 4.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(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) *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|
| | 재료비 (11) | 1. 사업용 및 시험연구,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- 실험실습기자재, 시약, 시료 구입비 -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, 선박,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.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(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, 보조 재료비, 매입부품비,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) 3.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. 동물,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|

| 보조비목 | 보조세목 | 내역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|
| | | 5. 사료구입비 |
| | 일반용역비 (14) | 1.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, 채용,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|
| 여비 (220) | 국내여비 (01) | 1.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|
| | 국외여비 (02) | 1.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.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(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) |
| 민간 이전 (320) | 보험금 (04) | 1. 보험금,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|
| 유형 자산 (430) | 자산취득비 (01) | 1.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(부속품 포함) 및 사무집기류 |
| | | 2. 도서관용 등 자본 형성적 도서 구입비 |
| | | 3. 서류함, 책상, 의자,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, 문화예술품 취득 경비 |